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74

발의연월일: 2022. 9. 15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김민석

맹성규 • 민병덕 • 송재호

안규백 • 이명수 • 조정식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,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,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,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활동 침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2조 및 제90조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2022 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	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
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	감면) ①
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	
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	
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	
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	
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	
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	
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	
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	
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	
해서는 취득세를 <u>2022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	<u>31일</u>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	
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	②
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	
직접 사용(종교단체의 경우 해	
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	
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	

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부 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,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 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 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 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

<u>2027년 12월 31일</u> -
,
③
<u>2027년 12월 31일</u> -

④ (생략)

⑥ (생략)

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	,
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	
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	⑤
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	
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	
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	
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	
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	
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	
법」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	
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	
을 각각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7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90조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	제90조(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	①
회 등 주민공동체(이하 "마을	
회등"이라 한다)의 주민 공동	
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	
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<u>2022</u>	<u>2027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제한다. 다	<u>년 12월 31일</u>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	

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,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면제한다. 다만,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 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 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 니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